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 1. 4촌 이내의 혈족
 - 2. 3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2. 2. 2.]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2. 2. 2.>]

-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6. 28.>

[전문개정 2010. 2. 1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2. 2. 2.>]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6.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2. 17.]

-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 ③ 삭제<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2. 17.]

제2조의3 삭제 <2021. 2. 17.>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4조의2 삭제 <2021. 2. 17.>

제4조의3 삭제 <2021. 2. 17.>

-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 1. 납세자의 성명
 - 2. 납세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 2. 11.>

[전문개정 2010. 2. 18.]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 1. 서류의 명칭
-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 3. 수령한 자의 성명
- 4. 교부 장소
- 5. 교부 연월일
- 6. 서류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0. 2. 18.]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 2. 15, 2013. 6. 28, 2015. 2. 3,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 1. 「소득세법」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 2.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2. 3, 2022. 2. 15, 2023. 2. 28.>
-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 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21. 2. 17., 2024. 2. 29.>
 -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 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3. 2. 28.>
 -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 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30,, 2013. 6. 28.>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

[전문개정 2010. 2. 18.]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전문개정 2010. 2. 18.]

-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지정 연월일
 - 3. 지정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2022. 2. 15.>
 -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

- 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2. 2., 2018. 2. 13.>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12. 30., 2013. 2. 15., 2020. 2. 11., 2024. 2. 29.>
-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 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 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 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 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 2. 29.>
- ⑥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4. 2. 29.>
- ⑦ 삭제<2016. 5. 10.>
-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20. 2. 11., 2024. 2. 29.>
- 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5. 2. 3., 2024. 2. 29.>
-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 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 ④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9.]

-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장 납세의무

제10조의2 삭제 <2019. 2. 12.>

-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신설 2015. 2. 3.>
-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5. 2. 3., 2016. 2. 5.>

-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0. 2. 11.>
 -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 2020. 2. 11.>
 -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 우
 -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2. 2. 2.]
-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 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발생한 날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0. 2. 11.]

제12조의4 삭제 <2020. 2. 11.>

제13조 삭제 <2021. 2. 17.>

제14조 삭제 <2021. 2. 17.>

제15조 삭제 <2021. 2. 17.>

제16조 삭제 <2021. 2. 17.>

제17조 삭제 <2021. 2. 17.>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 12. 30.>

-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개정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 2. 공증인의 증명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2. 28.>
-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 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2. 18., 2013. 2. 15., 2023. 2. 28.>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 4. 압류 연월일
-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18.,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 1. 친족관계
 -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2.]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10. 2. 18.]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8. 27.,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

[제목개정 2021. 2. 17.]

제20조의2 삭제 <1998. 12. 31.>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전문개정 2010. 2. 18.]

-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4장 과세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 2. 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2. 18.]

-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 1. 「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2. 17.>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1. 2. 17.>
-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 ⑦ 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2021. 2. 17.>
- 1. 보정할 사항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3. 보정할 기간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 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6조의2 삭제 <2021, 2, 17.>

제27조 삭제 <2020. 2. 11.>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제 <2015. 2. 3.>

-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28., 2015. 2. 3., 2017. 2. 7.>
-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2. 3., 2017. 2. 7.>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12. 2. 2.]

제27조의3 삭제 <2012. 2. 2.>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7조의 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2. 17.]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본조신설 2021. 2. 17.]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1. 2. 17.>

-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9. 2. 12.]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3. 2. 15.]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전문개정 2010. 2. 18.]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0조 삭제 <2012. 2. 2.>

-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신설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신설 2018. 2. 13.>
 -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8. 2. 13.]

-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0. 6. 2., 2021. 2. 17., 2022. 2. 15.>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 6.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본조신설 2010. 12. 30.]
-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 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 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4조의2 삭제 <2000. 12. 29.>

-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 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전문개정 2010. 2. 18.]

-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 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전문개정 2010. 2. 18.]

[시행일: 2024. 12. 27.] 제37조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 삭제 <2000. 12. 29.>

제41조 삭제 <2000. 12. 29.>

제42조 삭제 <2012. 2. 2.>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개정 2017. 2. 7.>

- 1. 삭제 < 2017. 2. 7.>
- 2. 삭제 < 2017. 2. 7.>
-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7.>
-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 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개정 2017. 2. 7.>

[전문개정 2010. 2. 18.]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2020. 6. 2., 2021. 2. 17.>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 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 5. 삭제 < 2021. 2. 17.>
-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신설 2021, 2, 17.>

[본조신설 2012. 2. 2.]

-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 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 ② 삭제<2020. 2. 11.>

[본조신설 2012. 2. 2.]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 삭제 <2010. 2. 18.>

-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전문개정 2010. 2. 18.]

제45조 삭제 <2019. 2. 12.>

-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13.>

-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 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전문개정 2010. 2. 18.]
-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7., 2020. 2. 11.>
 -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 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경우「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2, 29.>
 - <선물 2024. 2. 29.>
 -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3. 2. 28., 2024. 2. 29.>
 - 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2. 7., 2024. 2. 29.>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2017. 2. 7., 2020. 2. 11., 2024. 2. 29.>

[본조신설 2015. 2. 3.]

-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절 심사

-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4. 불복의 이유
 -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 1. 보정할 사항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3. 보정할 기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21. 2. 17.>]

-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 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2. 28.>
 -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7. 2. 7.]

[제목개정 2023. 2. 28.]

[제52조의2에서 이동 <2021. 2. 17.>]

-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 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2. 7., 2023. 2. 28.>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5명 이내의 위원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2명 이내의 위원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41명 이내의 위원
 -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3. 2. 28.>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 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2. 12., 2020. 6. 2., 2024. 2. 29.>
-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 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3.「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 ⑨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2.>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2. 12.>
- ④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4, 2, 29.>
-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
 - 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신설 2015.
- 2. 3., 2019. 2. 12., 2023. 2. 28.>
-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 에 관여하였던 경우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2019. 2. 12.>
-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2019. 2. 12.>
- ®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5. 2. 3., 2019. 2. 12.>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 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54조의2 삭제 <2009. 2. 6.>

제3절 심판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 ② 삭제<2019. 2. 12.>
- ③ 삭제<2019. 2. 12.>

[전문개정 2010. 2. 18.]

-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2.>
 -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 나.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
 -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 3. 삭제 < 2019. 2. 12.>
 - 4. 삭제<2019. 2. 1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2. 12., 2020. 10. 5., 2022. 2. 15.>
 -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 심판관이 된 사람
 -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신설 2024. 2. 29.>
 -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 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3. 「세무사법」제17조 또는 「관세사법」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문개정 2010. 2. 18.]
-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2. 13., 2019. 2. 12., 2024. 2. 29 >
 -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목개정 2018. 2. 13.]

-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15.> [전문개정 2010. 2. 18.]
-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
 -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20. 2. 1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 삭제 <1999. 12. 28.>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 2. 기피의 이유
-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전문개정 2010. 2. 18.]

제61조(질문·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요구하는 행위
- 2. 요구의 이유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4. 2. 29.>

-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0. 2. 18.]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 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신설 2020. 2. 11.>
 -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7., 2020. 2. 11.>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2. 12., 2020. 2. 11.>
 -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0. 2. 11.>
 -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2. 2. 15.>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 ⑥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 ⑦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신설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 ⑧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 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개정 2013. 2. 1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9.>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신설 2024. 2. 29.>
 -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10. 2. 18.]

[제63조에서 이동 <2023. 2. 28.>]

-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본조신설 2023. 2. 28.]

[종전 제63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23. 2. 28.>]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 12. 31.>

-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2019. 2. 12.>
 -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4.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4. 2. 21.]

-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 사가 필요한 경우
 -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2. 21.]
-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6. 11., 2014. 2. 21.>
 [전문개정 2010. 2. 18.]
-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23. 2. 28.> 1. 개인: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 2. 법인: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
 -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23. 2. 28.>
 -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 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 4.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소득세법」제 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또는「소득세법」제 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것

- 4의3.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전문개정 2010. 2. 18.]

-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조사기간
 -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13., 2022. 2. 15.>
 -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8. 2. 13.]

-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제63조의8 삭제 <2014. 2. 21.>

-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2. 국외자료의 수집 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삭제 < 2013. 2. 15.>
-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 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2. 18.]

[제63조의10에서 이동 <2018. 2. 13.>]

-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 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9. 2. 12.]

-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종전 제63조의11은 제63조의10으로 이동 <2018. 2. 13.>]

-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득세법」제156조의2제1항・제2항 및「법인세법」제98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 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 2. 13.]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 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 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8. 2. 13.]

[제63조의8에서 이동 <2010. 2. 18.>]

-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종전 제63조의14는 제63조의15로 이동 <2020. 2. 11.>]

-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4. 2. 29.>
 -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5.「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 ② 삭제<2019. 2. 12.>
-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개정 2017. 2. 7, 2019. 2. 12, 2023. 2. 28.>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 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12.>
-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 3. 청구 세액
- 4. 청구 내용 및 이유
-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 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 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2. 12.>

[제63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5는 제63조의16으로 이동 <2020. 2. 11.>]

-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 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2.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 3.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 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2. 13.>
-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1. 5.>
-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 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0. 2. 18.]

[제63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6은 제63조의17로 이동 <2020. 2. 11.>]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13.>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18. 2. 13., 2023. 2. 28.>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삭제 < 2018. 2. 13.>
 -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삭제 < 2018. 2. 13.>
 -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납세자보호관 1명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 다.「세무사법」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라.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2. 12., 2020. 6. 2., 2024. 2. 29.>
-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3.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2. 12.>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 ②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18. 2. 13., 2019. 2. 12.>
-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 2. 3., 2019. 2. 12., 2024. 2. 29.>
-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신설 2015. 2. 3., 2019. 2. 12.>
- ⑤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3., 2019. 2. 12.>

[본조신설 2014. 2. 21.]

[제63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7은 제63조의18로 이동 <2020. 2. 11.>]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 3. 진술하려는 내용
-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제63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8은 제63조의19로 이동 <2020. 2. 11.>]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3조의18에서 이동 <2020.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3조의18에서 이동 <2020. 2. 11.>]

[시행일: 2024. 12. 27.] 제63조의19

제7장 보칙

-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3. 설정의 이유
 -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3. 변경의 이유
 -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전문개정 2010. 2. 18.]

-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 4. 납세지도 실시기간
-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장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신설 2021. 2. 17., 2022. 2. 15.>
- ③ 삭제<2022. 2. 15.>
-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2. 17.>
-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⑤ 삭제<2022. 2. 15.>
-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결제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2021, 2, 17.>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 만원

- ①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2021. 2. 17.>
-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 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 2. 17.>
- ②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 ③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2. 2. 2., 2021. 2. 17.>
-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④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 ⑤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 2021. 2. 17., 2024. 2. 29.>
-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2022. 2. 15.>
-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⑪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2. 15., 2014. 2. 21., 2021. 2. 17., 2023. 2. 28.>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⑱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신

설 2013. 2. 15., 2015. 2. 3., 2021. 2. 17.>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DD분의 2D
250만원 초과	50만원

- ⑩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21. 2. 17., 2022. 2. 15.>
-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 2. 삭제 < 2022. 2. 15.>
-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 기기간이 지났거나「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3. 2. 15., 2021. 2. 17.>
- ②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6

[종전 제65조의6은 제63조의6으로 이동<1996. 12. 31.>]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 1. 「상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 1. 삭제 < 2021. 2. 17.>
-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 나.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공개
 -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5. 2. 3.>
-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2. 3.>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2. 3., 2016. 2. 5.>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2. 3., 2021. 2. 17., 2022. 2. 15., 2024. 2. 29.>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 상자"라 한다)인 경우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15. 2. 3.>
- ⑨ 삭제<2021. 2. 17.>
-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2. 2.,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아니한 경우
-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 니한 사실
- 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개정 2015. 2. 3., 2016. 2. 5., 2018. 2. 13.>
- ①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2016. 2. 5., 2017. 2. 7.>
- ③ 삭제<2021. 2. 17.>
- ④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조세범 처벌법」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신설 2012. 2. 2., 2015. 2. 3., 2016. 2. 5.>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22. 2. 15.>
-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신설 2022. 2. 15.>
- ⑪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 2. 28.>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 나.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신설 2023. 2. 28.>
-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목개정 2021. 2. 17.]

-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2. 3., 2018. 2. 13., 2021. 2. 17.>
 - 1. 통계자료의 명칭
 -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 2. 3., 2018. 2. 13.>
 -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 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2018. 2. 13.>

-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8. 2. 13.>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5. 2. 3., 2018. 2. 13.> [전문개정 2014. 2. 21.]
-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15.>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개정 2021. 2.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8장 벌칙 <신설 2022. 2. 15.>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제34989호,2024. 11. 12.>(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